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

동물복지 소비전환의 흐름과 촉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발제 윤리적 소비를 통한 동물복지 전환 가능성과 과제 박진선 부장 (서울 YWCA)
윤리적 소비 및 생산전환모델로서의 케이지프리 운동 조희경 대표 (동물자유연대)

토론 소비주체별 동물복지 소비전환을 위한 현안과 과제

좌장 우희종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승로 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유영관 사업부장 (풀무원식품)
유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동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주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의원

금태섭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원 김영주 김영춘 김진표 김학용 김한정 김현아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박 정 박주선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신경민 심상정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성엽
유은혜 윤준호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용득 이용주 이인영 이정미 이찬열 이학영 이현승 전현희 정병국
조배숙 주승용 진선미 진 영 최재성 추경호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철호 황주홍 황 희

토론회 순서

13:30-13:40 ■ 인사말씀(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 주제발표

13:40-14:00 - 발제1 : 윤리적 소비를 통한 동물복지 전환 가능성과 과제
(박진선 서울YWCA 생명운동국 부장)

14:00-14:20 - 발제2 : 윤리적 소비 및 생산전환 모델로서의 케이지프리 운동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토론(좌장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14:20-15:20

- 케이지프리 전환의 과정과 숙제
(유영관 풀무원 계란사업부장)
- 학교급식의 동물복지축산물 사용 가능성
(김승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축산급식팀장)
-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가능성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제안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15:20-15:40 ■ 질의응답

목 차

- 발제1 : 윤리적 소비를 통한 동물복지 전환 가능성과 과제
(박전신 서울YWCA 생명운동국 부장)
- 발제2 : 윤리적 소비 및 생산전환모델로서의 케이지프리 운동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발제 1

윤리적 소비를 통한 동물복지 전환 가능성과 과제

박진선 서울YWCA 생명운동국 부장

[2019 동물복지국회포럼 토론회]



윤리적 소비를 통한 동물복지 전환 가능성과 과제

박진선 부장
(서울YWCA 생명운동국)

1. 소비 트렌드



➤ '신(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삼성KPM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5. 17]

- **밀레니얼 세대·Z세대** : 국내 인구 **44%**, 주력 소비층 전환 [2019. 통계청 전망]
 -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22%**
 - Z세대(1970~1980년 출생 X세대 자녀), **21.7%**
- **신소비 세대 소비성향**
 - 자기중심적, 디지털 네이티브, 여가중시·현실성 동시 발현,
 - 환경·윤리적 가치 중시 '의식 있는 소비' 추구**

2. 시장의 변화

➤ '미래는 必환경'

- Ethical Consumer(영국), 제품의 윤리성 평가(1995년~)
- 윤리적 소비 평가기준 : ①동물 ②환경 ③인권 ④정치 ⑤지속가능성
- 상품의 윤리적 점수 관심 증가
 - 2017 트렌드모니터 소비자조사 "10명 중 8명 '윤리적 소비' 필요하다"
- 환경친화적 정책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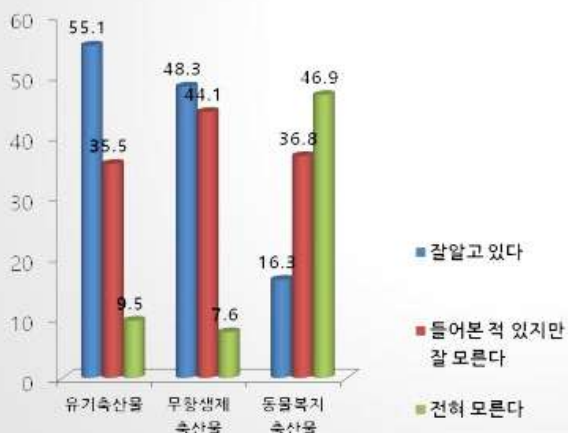
운영기업	운영방침	운영사례
아모레퍼시픽	환경·제품·고객 무한책임주의 선언(1993)	생산/유통/소비/폐기 전단계 환경오염최소화
LG생활건강	그린경영 2020전략, 그린제품 심의협의회	탄소성적표지인증
유니클로	지속가능경영 스테이트먼트 '옷의 힘을 사회의 힘으로'	'전 상품 리사이클 캠페인', 친환경 진 워싱, 동물복지

3.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인식

- 조사 시기 : 2016. 7. 20 ~ 8. 10
- 조사 대상 : 축산물 구매경험 소비자 9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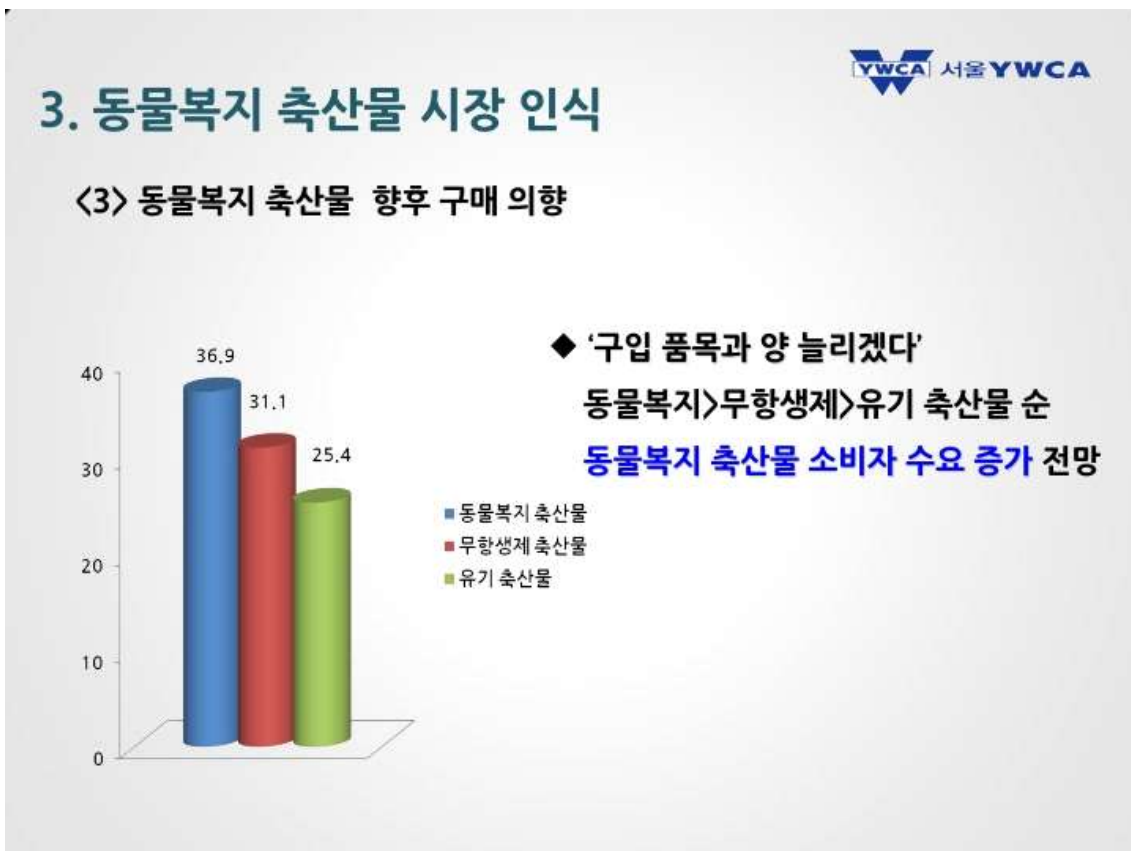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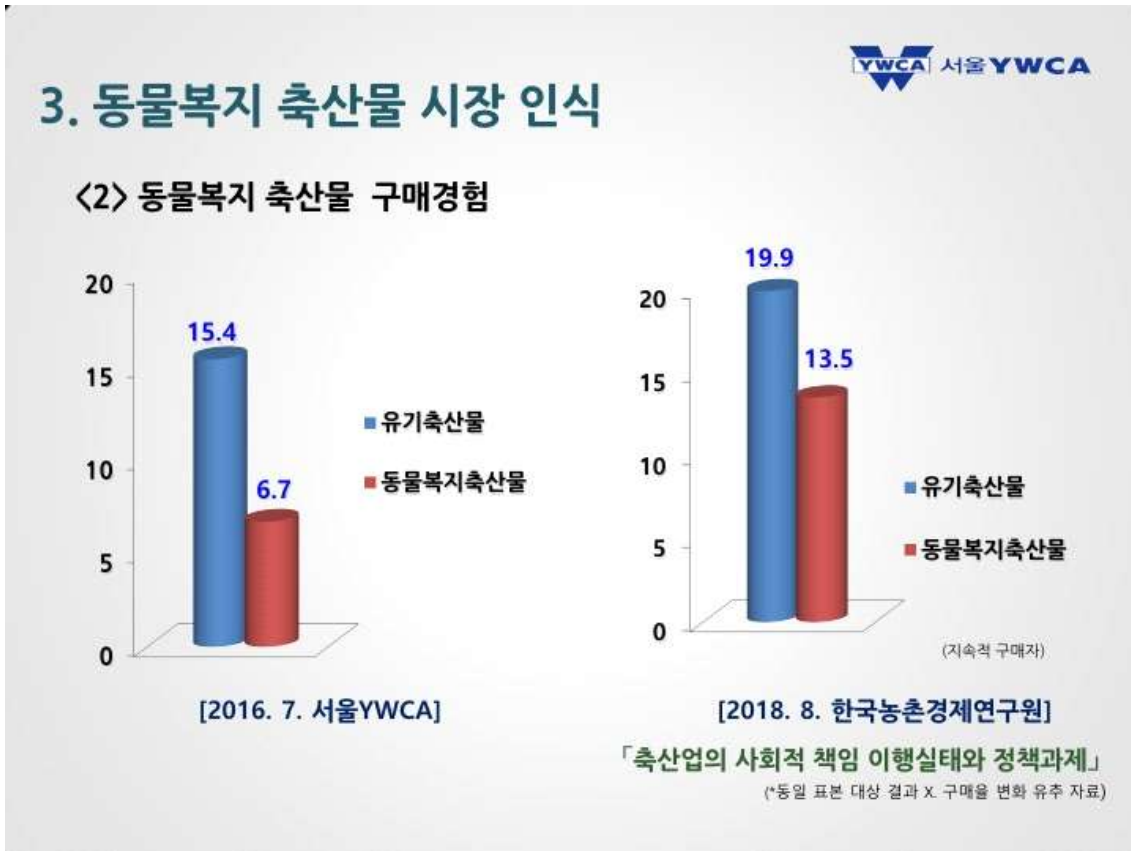
[서울YWCA 조사]

<1>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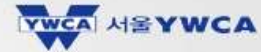


◆ 인증제도 '잘 알고 있다'는
유기>무항생제> 동물복지 축산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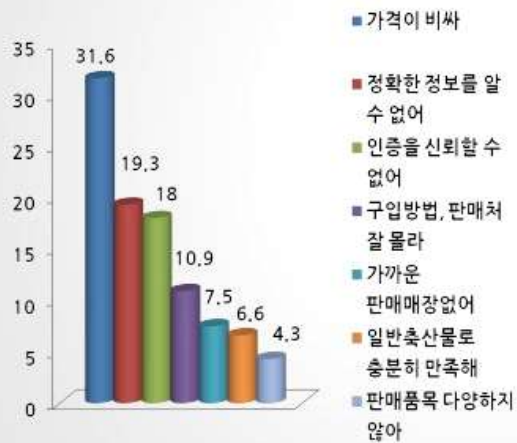
◆ 유기축산물 절반 이상 인지
동물복지축산물 10명 중 2명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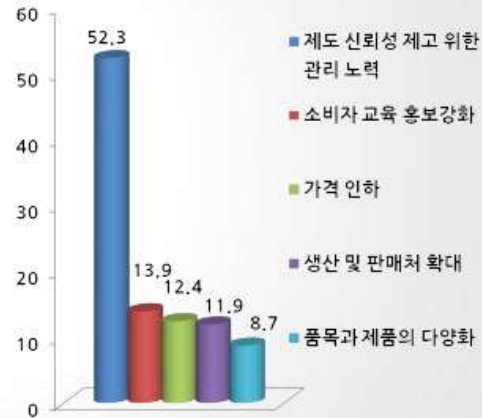
3.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인식



<4>비구매 이유/ 시장 개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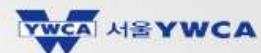


[비구매 이유]



[소비촉진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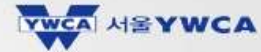
4.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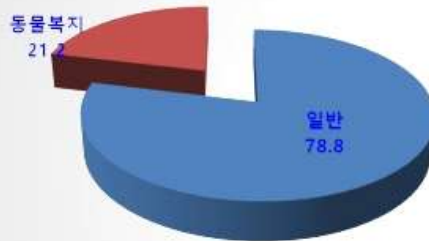
대 상	축산물 판매업소 총 153곳
방 법	◆ 조사 기간 : 2017. 7. 24 ~ 8. 11 ◆ 조사 방법 : 매장 방문, 온라인 사이트 방문조사 ◆ 유통경로별 분포 : 서울, 대전, 충주, 광주, 부산, 진주 6개 지역 백화점 18곳, 대형마트 38곳, 기업형 슈퍼마켓 14곳, 친환경매장(생협포함) 56곳, 일반슈퍼·정육점 15곳, 인터넷 쇼핑몰 12곳
내 용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가격 및 표시 실태, 일반축산물 100g 단위당 가격(가격비교군)

[서울YWCA 조사]

4.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 현황



<1> 조사대상 축산물



◆ 총 1,744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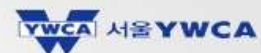
일반 축산물 1,375건(78.8%)
동물복지 축산물 369건(21.2%)

◆ 동물복지 축산물 종류별 분포는
달걀 263건(71.3%),
닭고기 66건(17.9%),
돼지고기 40건(10.8%)으로
달걀의 시장 분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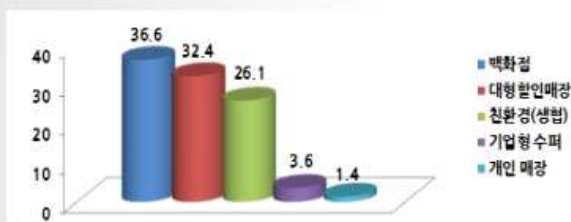


[동물복지 축산물 축종별 분포]

4.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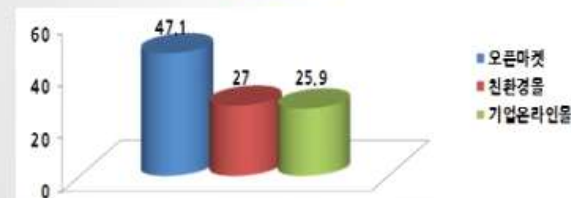


<2> 유통경로별 판매현황



[오프라인]

◆ 오프라인 매장 총 284건
백화점 104건, 대형할인매장 92건,
친환경매장(생협) 74건,
기업형수퍼 10건, 개인매장 4건 순



[온라인]

◆ 온라인 조사 총 85건
오픈마켓 40건, 친환경(생협)몰 23건,
기업온라인몰 22건 순

4.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현황

<3> 인증·정보표시 현황



[인증 현황]

- ◆ 생산자 정보는 '연락처만 표기' 55.8%로 가장 많았고, '미표기' 23.6%, '생산자, 농장명 표기' 11.7%, '생산자, 연락처' 표기 8.9% 순이었음

- ◆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생산자 정보표시 방법, 기준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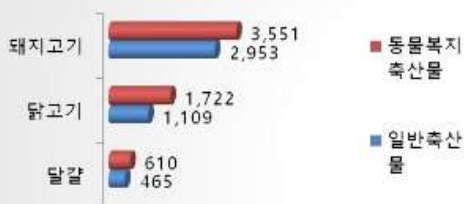
- ◆ 동물복지 인증만 받은 경우 7.9%(21건)
2개 이상 복합 인증 경우 77.8%(224건)
동물복지 축산물 다양한 품질관리 노력 시사



[생산자 정보 표시]

4.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현황

<4> 일반축산물 대비 가격



	일반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물	가격 대비율
달걀	465(378)	610(261)	31.1%
닭고기	1,109(360)	1,722(62)	55.2%
돼지고기	2,953(1,375)	3,551(39)	20.3%

*100g 단위가격(달걀 개당 가격)

[동물복지 축산물 가격]

- ◆ 일반 축산물 대비 동물복지 축산물의 가격은 **닭고기(1.5배)>달걀(1.3배)>돼지고기(1.2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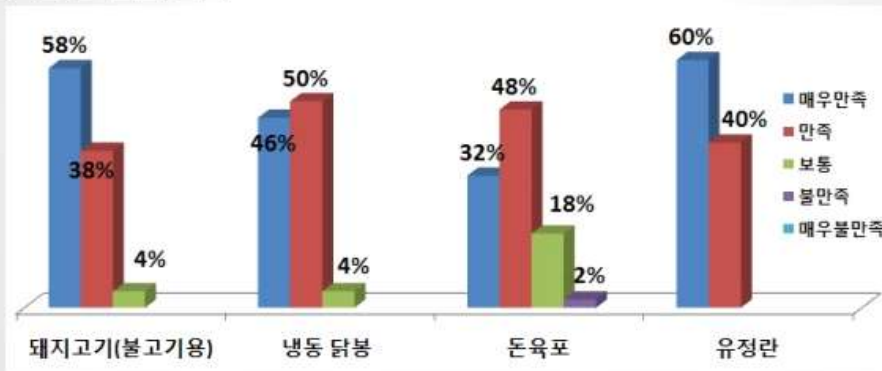
- ◆ 축산물 종류별 일반 축산물 가격 대비 결과, **달걀**의 경우 '일반란' 465원, '동물복지+무항생제 +HACCP'인증란 565원, '동물복지+ HACCP'인증란 567원, '동물복지'인증란 658원, '동물복지+무항생제'인증란 671원 순으로 **인증종류에 따라 개당 가격 차이 99~205원**

5.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체험

- 진행 시기 : 2018. 7. 20 ~ 9. 30
- 참여 대상 : 서울 경기 지역 주부, 소비자 50명
- 운영 내용 : 월 1회(3회), 동물복지 축산물 배송 표시상태 확인·소비평가
- 체험 제품 : 돼지고기(불고기용), 닭봉, 돈육포, 동물복지유정란

[서울YWCA 조사]

<1> 품질 전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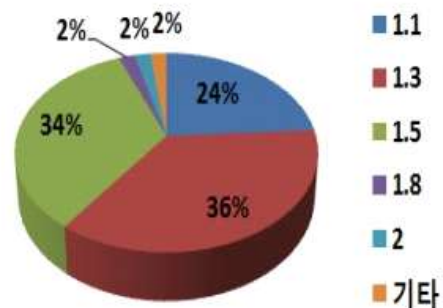
5.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체험

<2> 동물복지 축산물 가격 부담 의향

동물복지축산물 가격

1차	동물복지 생알다리살 불고기용	500g	15,000원
2차	동물복지 무항생제 닭봉	400g	4,400원
2차	직화구이 돈육포	150g	14,900원
3차	동물복지유정란	10알	7,500원

* 소비체험용 구매 축산물 가격 참조



- 일반축산물 대비 동물복지축산물의 가격부담 의향

1.3배(36%)>1.5배(34%)>1.1배(24%) 순, 1.3~1.5배 적정선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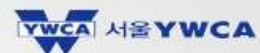
6. 동물복지 축산 시장 활성화 과제

1.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 경로 확대 지원, 홍보 강화

- 달걀의 경우 유통경로 다양하나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온라인 판매 거의 없고, 오프라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백화점, 친환경매장에서 주로 판매됨
- 일반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대형할인매장 등 보다 구매가능한 유통경로의 확대, 정책적 지원 요구됨

2. 주요 정보 고지 방법 검토

- 동물복지 달걀은 상품포장에 인증번호, 생산자, 생산지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기되었으나, 포장육과 소분 판매로 판매형태가 구분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정보 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환경으로 차별적 품질은 강조하지만, 인증관련 정보는 상품별도표기로 대체하는 등 정보표시가 다소 미흡하여 축종별, 판매형태별 고지 방법 검토 필요



6. 동물복지 축산 시장 활성화 과제

3.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 노력 강화

- 시장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증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ex, 모바일 앱)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 노력 필요
- 생산지, 생산자명, 연락처 등 생산자 정보 표시 강화

4. 시장 수용 가능한 적정 가격 검토

- 닭고기, 돼지고기, 유정란 체험단의 98%가 추후 동물복지축산물 구매 의향 있다고 응답, 품질 만족도 高
- 가치지향 소비 행태로의 전환, 보다 많은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장 적정 가격 형성에 대한 다각적 접근 요구됨
(ex. 단계적 인증 농가 혜택 부여, 생산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 축소, 투명한 거래 환경 만들기)

7. 윤리적 소비로의 전환

➤ 미닝아웃(Meaning - out) 시대

- '미닝아웃' 시대의 특징, 윤리적 소비
-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신념을 산다
- 기업에는 인권, 환경, 상생의 윤리적 가치를 요구한다
- 지금의 공장식 축산환경, 소비자의 선택은?

➤ 지속가능성

-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 생산, 소비 지역과의 상생
- 아동학대, 노동력 착취가 없는 공정 무역
- 집단발병과 대량살처분으로 반복되는 대응! 과연 지속가능한가?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실천이
희망입니다!!



발제 2

윤리적 소비 및 생산전환 모델로서의 케이지프리 운동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윤리적 소비 및 생산전환모델로서의 케이지프리 운동

2019. 5. 30.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생 산

① 관행축산 생산방식의 일부 개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18. 1. 23. 정부업무보고)
- 산란계 사육밀도 $0.05\text{m}^2 \rightarrow 0.075\text{m}^2$ (동물복지농장기준 0.11m^2)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 및 적용시기(안)		2018년 하반기	2019년	2025년
구분				
공통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기준 없음→25ppm 이하)	-	전체(25ppm)	전체(20ppm)
	사육밀도($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	신규	-	기존
산란계	절식을 통한 강제 탈갈이 금지(기준 없음→금지)	-	전체	-
	임신돈 고정틀 사육제한(기준 없음→수정 후 4주)	-	신규	기존
돼지	임신돈 사육밀도($1.4\text{m}^2/\text{마리} \rightarrow 2.25\text{m}^2/\text{마리}$)	-	신규	기존
	사육밀도(시설에 따라 $33\sim 39\text{kg}/\text{m}^2 \rightarrow$ 환경평가에 따라 $33\sim 39\text{kg}/\text{m}^2$)	-	전체	-
육계	깔짚 관리(기준 없음→입식 때마다 교체)	-	전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 동물복지 '형' 축산으로 기존 관행 축산의 틀 내에서 진행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생 산

②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

- '12년 산란계 시작 → 인증대상 확대

· 217개 농가 (19/5/24 기준)

축종1	인증제도 도입	농장수	전체 농장/가구수 (가축동향조사, '19.3월)	인증 비율 (농장수 기준)
산란계	'12년	130	981	13.3% ¹⁾
육계	'14년	64	1,654	3.9%
돼지	'13년	14	6,176	0.2%
젖소	'15년	9	6,342	0.1%
한·육우		0	95,696	-
오리		0	449	-

- ✓ 산란계와 육계에 집중, 전체 농가수와 비교시 극히 일부
- ✓ 사육환경 뿐만 아니라 도축장 및 운송차량 등 축산의 전과정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 필요

1) 가구수 기준 13.3% 사육마릿수 기준 2.6%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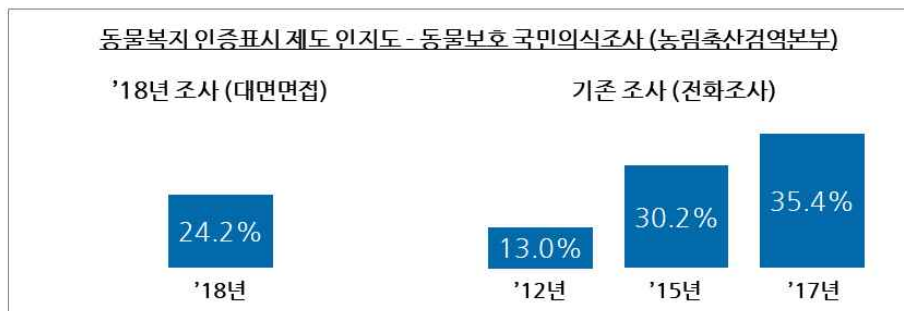


소 비

①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

-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동물복지 인증표시제도에 대해 인지 24.2% → 인지응답자 중 구매경험 58.2%



- ✓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거나, 인지도 자체의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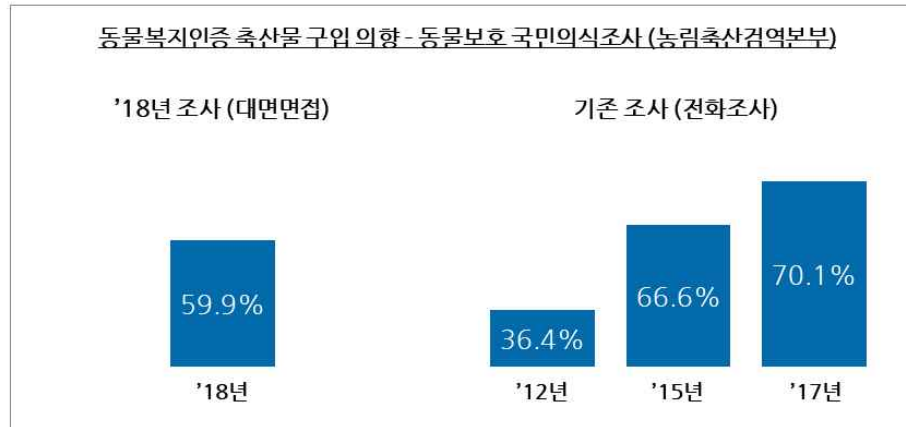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소 비

② 구매의사대비 낮은 구매율

- 인증제 인지 후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의향 59.9%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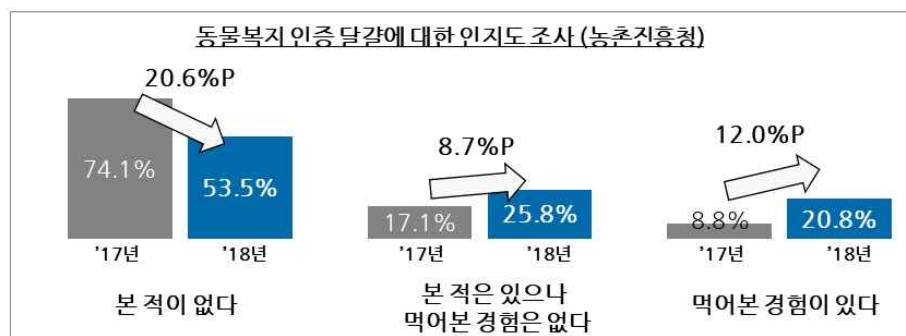


소 비

② 구매의사대비 낮은 구매율

- 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동물복지 달걀 인지도는 '18년 전년 비 20.6%P 개선 ↔ 구매경험은 12%P 증가



✓ 동물복지 인증 달걀 인지도 대비 구매경험의 증가폭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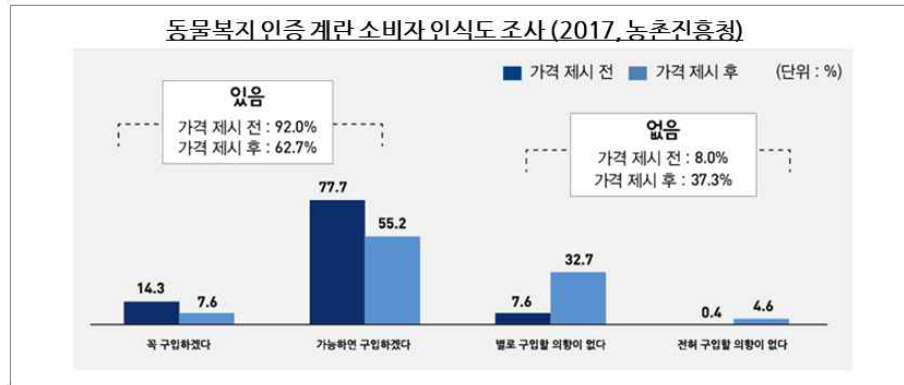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소비

② 구매의사 대비 낮은 구매율

- 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17년)

가격 제시전 구매의향 92%에서 가격 제시후 63%로 급감



✓ '가격'이 동물복지 계란 소비에 걸림돌, 구매의향과 실구매 간 괴리 예상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유통

제한적인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 채널

-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통채널의 소극적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
 - 대형마트 3사 中 롯데마트와 이마트 스타필드 특수매장 外 취급 한정적
 -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계란·닭고기 취급에 限, 축종 확대 노력 필요

-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변화, 별도행사 기획 등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제한적

- 동물복지 축산물을 알리고, 윤리적 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 발휘 기대

✓ 소비변화 대응이 아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기존 동물복지 축산 전환 전략의 한계점

- ✓ 기존 관행 축산의 패러다임 유지
 - 동물복지 농가는 전체 축산 농가수와 비교시 0.2% 수준 (농가수 기준)
 - '15년 인증기준이 마련된 한우·육우·오리, 동물복지 인증농가 부재
- ✓ 동물복지 의식과 현실의 괴리
 - 가격 제시 전 / 후 구매의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
 - 10명 중 6명이 동물복지 축산물 구매의향 ↔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란계의 경우에도 동물복지달걀은 전체 식용란 시장의 4%에 불과 (업계추정, 사육마릿수 기준 2.6%)
- ✓ 소비 변화를 유인을 위한 유통채널의 판로 제공 및 인식 확산 노력 부족
 - 대형 유통업체의 생산농가 및 소비자 영향력 절대적임에도 선도적 노력 및 사회적 책임의 부족

전체 축산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변화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등 생산 방식 규제에 집중하는 기존 방향은
 생산은 물론 시장과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에 역부족

01.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현황과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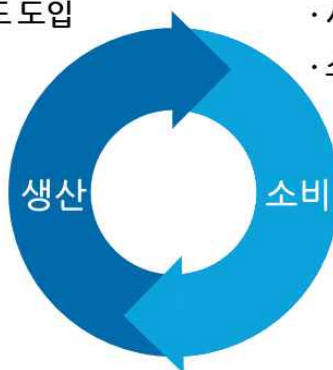


동물복지 축산 전환의 전략 수정 필요

기존 전략

- 동물복지축산 개념 및 제도 도입
- 법과 제도의 강화를 통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집중

변화의 강제



수정 전략

- 시민인식 확대
- 소비/유통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자발적 전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생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해외

① 정책적 변화 : Battery Cage 금지

- 유럽연합(EU) : '12년부터 Battery Cage 전면 금지
-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3개주¹⁾

② 시장의 변화 : 기업의 케이지 프리 선언 및 소비의 변화

- 영국 : 방사형 산란계 달걀이 복지형 케이지 달걀을 제치고 계란 점유율 1위
- 미국 : 300개 이상 글로벌 대기업의 케이지프리 선언 지속



1) 캘리포니아, 미시건, 오하이오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해외

'19. 5월 동물자유연대가 참여한 OWA¹⁾의 힐튼호텔 케이지 프리 시위



→ 힐튼호텔, 케이지 프리 이행 약속 선언문 즉시 게시

1) OWA(Open Wing Alliance) : 케이지 프리 운동을 전개하는 전 세계 각 국가의 단체들의 연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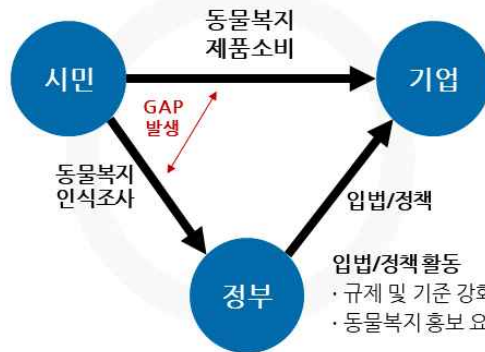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국내

동물자유연대의 CAGE FREE 운동

- ① 대시민 캠페인
· 동물복지 제품 구매 확산
· 동물복지 인식 제고



- ② 협상 및 캠페인
· 협상 및 MOU 체결
· 특정 기업 대상 캠페인

- 입법/정책 활동
· 규제 및 기준 강화: BC-out기한 설정 요구
· 동물복지 홍보 요구 및 인센티브 강화

동물복지인식 및 구매의향과 실제 구매와의 Gap에 초점
→ 대시민 캠페인 및 기업압박, 변화유도를 통한
동물복지축산의 시장 비율 확대 중점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국내

① 시민 대상 : 1,2 있는 달걀 캠페인



1	2	3	4
방사사육	축사내 평사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기존 케이지 (0.05㎡/마리)

- 산란계 사육환경 표시제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 진행
 - 매월 12일 일리 1,2 있는 달걀 캠페인
 - 일리 1,2 있는 달걀 텀블벅
 - 달걀 포장재 사육환경 표시 촉구: 5,000인 서명
- 현행 난각 표시제를 포장재까지 표시하도록 입법 및 정책 활동 진행중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국내

② 기업 대상 : 기업의 Cage-Free 선언 유도



맥도날드 언해피밀 캠페인 / 시민활동 어태커 모집



스타벅스 본사 앞 기자회견 진행



→ ‘메리어트 호텔’, ‘포시즌스 호텔’ 케이지 프리 선언

02. 국내외 케이지 프리 운동과 성과

국내

② 기업 대상 : 풀무원의 Cage-Free 선언 ('18. 8월)



케이지프리 이행을 위한 풀무원식품(주) - 동물자유연대 MOU ('18. 8. 22)

- '28년까지 풀무원 유통·판매 식용란 전체를 케이지프리계란으로 전환 협약
- MOU 통해 이행과정 점검 협의
- 풀무원의 케이지프리 선언으로 브랜드란 80%가 케이지프리 계란으로 전환 기대



03. 케이지 프리 추진을 위한 극복과제와 제역할

소비 전환 활성화 과제

신뢰 확보

- 케이지프리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
- 단계별 소비 선도 정책 필요
정부정책에 의해 소비 선도 (정부·공공기관의 케이지프리 선언)
→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의 홍보 : 자발적인 소비 문화 확산

편의성 확대

- 포장재 표시 및 가시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식별 강화
- 기타 인증과의 관계 정리
- 보다 이용이 편리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접근성 강화

- 일정 비율의 제품 취급 및 진열 의무화
- 취급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정보 제공 강화

03. 케이지 프리 추진을 위한 극복과제와 제역할



소비 전환을 위한 제역할

- 동물복지축산과 선택권에 대한 인식 확대 · 요구
- 개인적 실천의지 표명 및 실천, 보이콧 참여



- | | |
|-------------------------|------------------------|
| • 자발적 케이지프리 선언·이행 | • 동물복지축산물을 활용한 급식 실시 |
| • 유통사의 취급 및 홍보 · 마케팅 확대 | • 정부/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윤리적 소비 |

03. 케이지 프리 추진을 위한 극복과제와 제역할



생산 전환 활성화 과제

진입장벽 축소

- 동물복지축산특성 및 소규모농가를 고려한 규제 및 제도 적용
- 동물복지 전환 지원 별도 예산 확충

지원 확대

- 가격 보조,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확대
- 정부구매제도 등 판로 확대 정책 도입

기술 지원

- 동물복지 사육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시설비용 감소
- 취급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03. 케이지 프리 추진을 위한 극복과제와 제역할



입법 · 정책 과제

- ☑ 정부 차원의 소비 선도 정책
- ☑ 포장재 표시 도입
- ☑ 관행 규제 철폐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실질적 지원 확대
- ☑ 동물복지축산물 급식, 우선구매제도

토론 1

케이지프리 전환의 과정과 숙제

유영관 풀무원 계란사업부장

토론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계란 공급현황 및 동물복지 계란의 학교급식 가능성

김승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수축산급식팀장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소개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식재료 공공조달 시설임
- 2019년 5월 현재 강서시장에 위치해 있는 1.2센터와 가락센터를 통해 총 930개 초중고 학교에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음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계란 취급 기준

- 관련 기준
 - 서울특별시와 공사 등이 설정한(2016년 2월)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조달(취급·품질) 기준' 준수
- 관련 내용

< 난류의 급식조달(취급·품질) 기준 관련 내용 >

- 3.6.1.5 품질기준(식용란은 무항생제 공급 원칙)
 - 계란(살균액란 포함) :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
- 3.6.2 학교에서 주문한 등급이 부족할 경우, 공급업체에서 학교에 대체공급 등급을 알리고 상위등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상위등급은 다음과 같다.
 - 계란(살균액란 포함) : 1*등급>1등급
- 3.6.4.4 냉장육의 경우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란 : 산란일 기준 10일 이내

3. 공급업체 현황과 선정기준

- 공급업체 역할
 - 산지 농장에서 센터(강서센터, 가락센터)까지 학교에서 주문한 물량 납품(배송은 별도 배송업체가 수행, 배송수수료 12.8%)
- 등록현황 : 3개 업체(~'20. 8. 31)
 - 3년 단위로 업체 모집(차기 모집은 2020년 상반기 중 모집예정)

○ 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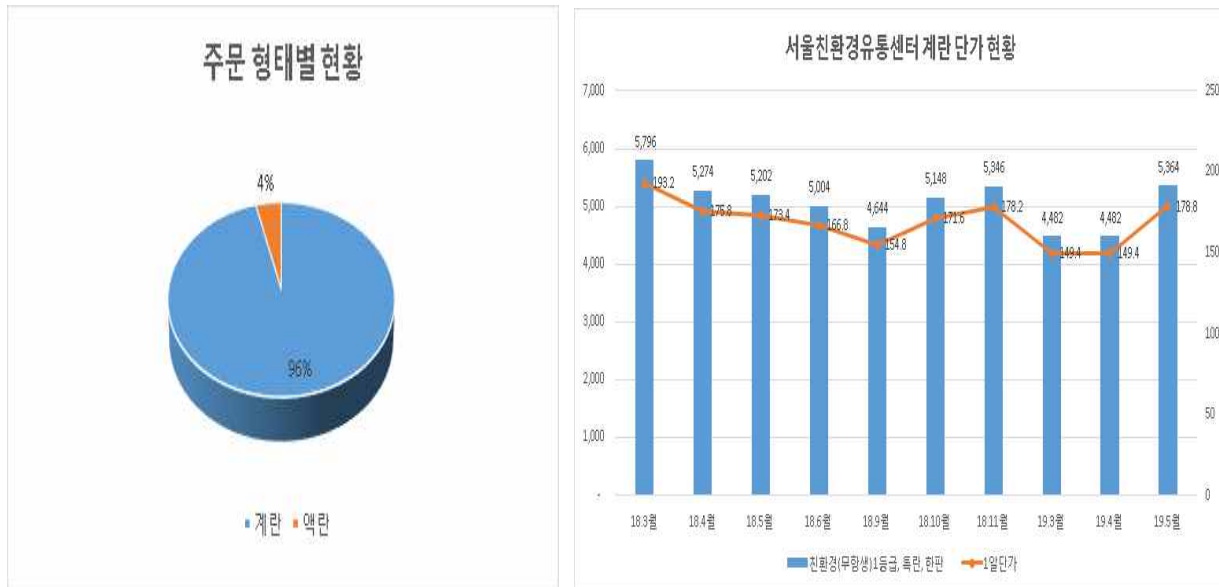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기본 자격	○ 계란을 직접 생산하여 소분하는 업체[자가 생산 업체(조합원이 생산한 계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만 가능하며, 중간유통업체는 신청 불가] ○ 법인은 본점 외 지사·지점·분사무소(이하 '지점 등')로도 신청 가능(소재지 제한 없음)
영업 허가 등	○ 계란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신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HACCP 인증
납품 실적	○ 최근 1년 간(접수 마감일부터 기산) 서울특별시 내 서로 다른 급식학교 5개교 이상 납품(간접 납품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 ※ 단, 서울시 급식학교로부터 5개 이상 추천 받은 경우도 인정함
필요 시설	○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포장 등) 작업장 보유 - 작업장을 자가 단독 또는 임차인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며,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불인정 ※ 단, 법인의 경우 작업장이 지점 등의 형태로 등기되어 있어 신청자의 명의로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소유여야 함 ○ 친환경 계란은 일반 계란과 구분된 별도의 작업 공간 보유(모두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자격 제한	○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제외) ○ 영업 신고·등록증, 행정처분 이력 등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업체

○ 특이사항

- 유관기관 학교급식 정책(여건) 변화 등에 따라 공사(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가 급변할 수 있음
- 공사의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산 가공상품 등록업체(난류)로 선정된 경우, 서울시 소재 학교에 당연한 공급 권한이나 계약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학교에서 발주하는 특정 등록업체 품목 및 수량에 한하여 공급함)

4. 계란의 학교급식 공급 현황

- 2018년 226개 학교가 325백만원 주문 및 공급
- 학교 발주별 현황



※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공산품 입찰시 계란을 포함시켜 주문하고 납품받는 형식을 취함(센터를 통한 주문이 아니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시스템(eaT)이나 나라장터 이용)

5. 학교 관련 사항

- 계란 발주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성’과 ‘안전성’
 -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정부 인증품도 불신을 받고 있음
 - 동물복지(케이지 프리) 계란도 닭의 먹이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임
- 2018년 1개 학교당 연간 발주 규모는 평균 1,649,301원
- 2019년 5월 일평균 70개~80개 학교가 3,500천원을 주문하고 있으며, 학교당 하루에 20~30kg의 계란을 60,000원~100,000원 정도 발주하고 있음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가능성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현황

- 동물복지축산농장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법 제29조제1항에는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축종별 인증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동법 제29조제3항의 축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항의 홍보 및 교육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있음¹⁾
- 현재 7개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실제 인증은 산란계, 육계, 돼지, 젓소 4개 축종 총 145개 농가에 대하여 인증되어 있음(<표 1> 참조)

1)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표 1〉 축종별 동물복지축산인증 농가 및 사육두수(2015~2017년)

(단위: 호, 천 마리, 천 수)

축종 (도입년도)	2015		2016		2017(a)		전체(b)		비율(a/b*100)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산란계(2012)	68	844.5	89	1,033.5	95	1,280.5	3,000	170,551	4.2	2.1
육계(2014)	2	102.2	11	974.4	30	2,294.5				
돼지(2013)	6	24.9	12	31.8	12	34.1	6,000	11,273	0.2	0.3
젖소(2015)	-	-	2	0.2	8	1.2	7,000	409	0.1	0.3
한우(2015)	-	-	-	-	-	-	99,000	3,020	-	-
오리(2015)	-	-	-	-	-	-	497	7.5	-	-
염소(2015)	-	-	-	-	-	-	12,295	393	-	-
계	76	971.6	114	2,039.9	145	3,610.3	127,792	185,653.5	0.75	0.45

주: 전체사육 현황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는 3,000수 이상 사육 가구수, 소와 돼지는 이력제 자료로 농장수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8.10. pp.376~378.;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9.5.27.;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농장대 처, 최악 AI 불려 ... 첫 발생, 즉시 최고 경보 대응하라-한겨레(2017.1.10.) 보도 관련」, 2017.1.20.을 참조로 작성함

○ 전체 축산업의 사육두수 대비 동물복지축산의 사육두수의 비율은 2017년 기준 닭(산란계와 육계)은 약 2.1%, 돼지 0.3%, 젖소 0.3%의 수준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자료(2019.5.27.)²⁾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산란계는 전체 1.5% 수준임

□ 동물복지축산의 경제성 분석(산란계 대상, 2016년 기준)³⁾

○ 일반 케이지 산란계 농장을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사육수수 감소 수준(일반 = 100 기준)

- 평사 전환(12%), 다단식 사육 전환(24%), 확장케이지(66.7%) 수준으로 감소

○ 동물복지 산란계의 사육형태별 경영비(일반 = 100 기준)

- 일반 케이지 산란계 농장 대비 경영비는 4.8~33.3% 상승함

- 평사(128.7%), 평사+방사(131.2%), 다단식(133.3%), 확장케이지(104.8%)

※ 네덜란드와의 비교: 케이지 한국(100%):네덜란드(101.9%), 다단식 한국(100%):네덜란드(92%)의 수준임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경제성 분석 보고」, 2017.11.9.

3)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경제성 분석 보고」, 2017.11.9.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의 전환시 시설 투자비
 - 평사: 9,589원/수, 80,844원/m²
 - 다단식: 29,795원/수, 506,518원/m²
- 일반 케이지 산란계 농장(=100) 대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농가소득 추정
 - 확장케이지(41%), 평사(78%), 평사+방사(120%), 다단식(148%)
 - ※ 계란 수취가(개당): 케이지 100.7원, 평사 및 다단식 223원, 평사+방사 273원 적용
- 동물복지축산 산란계 농장의 계란 농가수취가격이 ‘평사와 평사+방사’는 250원(개), ‘다단식’은 200원(개), ‘확장케이지’는 111원(개) 이하일 경우 경쟁력이 일반케이지 농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반케이지 농가소득 270,536천원(계란 1개당 수취가 100.7원) 기준
- 즉, 일반 계란에 비해 동물복지축산 계란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음

II. 동물복지축산전환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방안 검토

- 국내 축산업의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 축진을 위해서는 생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확산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동물복지축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둘째,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에서의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함
- 첫째, 동물복지축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해당 농가의 소득보장으로 귀결됨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동물복지축산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산란계를 기준으로 가격은 일반 계란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더욱이 경영비도 일반 농가에 비해 최대 30% 이상 높고,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시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도 동물복지축산 농가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박홍근 의원님께서 토론을 요청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축산물의 우선구매제도’ 도입 방안은 축산물의 소비 진작을 통한 동물복지축산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국내 유사한 대표적인 입법례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의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 조항이 있음(의무조항이 아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게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장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있음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사업이나 예산 지원 등도 없는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 군부대 납품 등으로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음

- 다만 학교급식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도입은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2016년 1월 14일 발표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정의정서」(이하 개정 GPA라 함)와 예는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국산 농수산물을 우대하는 급식조달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됨
-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모두 정부조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GPA」 내용인 급식 프로그램 예외 조항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국·공립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경비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개정 GPA」와 합치하나, 학부모가 급식비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립학교 급식(비용부담 주체 불문)의 경우는 「개정 GPA」가 적용되지 않아 「WTO 상품협정(GATT) 또는 보조금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표 2〉 학교의 유형별 WTO 협정 합치(또는 위반) 여부

		국·공립		사립
비용부담		지자체	학부모	비용 부담 여부 불문
WTO 위 반여부	정부조달(GPA)	합치	-	-
	상품협정(GATT)	-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
	보조금협정	-	-	위반 가능(금지보조금)

- 이와 같이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입법 기술적'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
- 그러나 해당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임

4)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일반주석 3항: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조달(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참고로 한미FTA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제5절에서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에 적용제외)

○ 또한 학교급식으로 확대할 경우 앞서 기술한 국제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 둘째,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소비자를 비롯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2018.12.)’⁶⁾에 따르면 동물 복지축산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표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약 24.5%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2017년 35.4%에 비해 떨어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 한번이라도 구입한 적이 있다(21.6%), 구입한 적이 없다(38.9%)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의향: 구입의향이 있다(59.9%)로 나타나 2017년 70%에 비해 떨어짐

5)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6) 원포인트듀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12.

- EU의 동물복지축산 정책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EuroBarometer 2005)에는 소비자의 약 49%가 축산물 구입시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있고, 38%가 계란 구입시 케이지 사육이 아닌 계란을 구입하고 있고, 55%가 국내 농장동물복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⁷⁾
- 이후 2007년 조사(EuroBarometer 2007)에서는 동물복지축산인증표시제도(Labeling) 대하여 현재 사용되는 표시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5%에 달해 표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⁸⁾
- 그리고 응답자의 60%가 지난 10년간 EU에서 동물복지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9%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EU 수준의 동물복지축산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그리고 최근 스웨덴의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시장에서의 비중이 닭고기는 90%, 우유 80%의 수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의 경우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밀집식 사육에 대한 규제 정책과 함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홍보와 동물복지 관련 운동을 통해 사회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었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동물복지축산이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영국의 경우 생산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입회비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 대표적인 사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r Cruelty to Animals)의 동물복지 인증프로그램인 ‘Freedom Food Program’

7)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s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pecial EuroBarometer 229/Wave 63.2-TNS Opinion & Social, 2005.

8) European Commission,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s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pecial EuroBarometer 229/Wave 63.2-TNS Opinion & Social, 2007.

-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 차원의 홍보, 시민사회 차원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 운동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Ⅲ. 그 밖에 향후 과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동물복지축산의 확산을 위한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동물복지축산자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 단체 차원의 홍보 등의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EU는 ‘유럽농업개발기금’을 통하여 참여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저변확대를 위한 범세계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음
 - 즉 동물복지축산농장 경영체 차원의 단체를 조직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축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들의 납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되며, 주요 용도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추산업자·소비자·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사업에 사용함(현재 축산의 경우 축종별 자조금만 조성되어 있음)
 - 둘째, 동물복지축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친환경농수산물의 경우 친환경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음
 - 셋째,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시에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 「동물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득한 경우에 대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중소규모 축산의 경우 국고보조 10%, 융자 70%, 자부담⁹⁾ 20%)하고 있음
- 따라서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의 경우 ‘농업경영체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가능함

9)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토론 4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제안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M E M O

M E M O

M E M O

M E M O
